

1. 개정이유

환경오염피해구제급여 중 요양생활수당, 유족보상비 등의 지급기준이 되는 피해등급을 산업재해의 장해등급을 준용하고 있어 소수의 환경오염 피해자만이 장해등급에 해당하여 다수 피해자가 요양생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피해등급 기준을 가습기살균제 및 석면 피해등급과 동등한 수준으로 변경하여 환경오염피해자가 제때 치료 및 요양 등에 필요한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 중 나타난 문제점을 일부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피해등급을 현행 1~10등급에서 1~5등급과 등급외로 조정하고 그에 따라 요양생활수당 및 유족보상비 지급기준도 5등급으로 변경(안 별표 5 및 별표 6)

나. 요양생활수당 지급 기준금액을 중위소득의 1000분의 897에서 중위소득으로 변경(안 별표 5)

다. 요양생활수당의 지급기간을 1~3등급은 5년간으로 하고, 4~5등급은 3년으로 하되 일시금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변경(안 제15조 및 별표 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피해구제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 전자우편 : smilexx2@korea.kr

- 팩스 : 044-201-6823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전화 : 044-201-6819, FAX : 044-201-68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부공고제2020-950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중 요양생활수당 및 유족보상비의 지급기준이 되는 피해등급의 구간을 10등급에서 5등급으로 개편하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피해등급의 기준을 환경부령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피해인정질환의 중증도를 평가하여, 그 점수에 따라 피해등급을 결정(1~5등급 및 등급 외)하는 규정 신설(안 제16조의2 및 별표)

나. 신체증상, 합병증, 예후 및 치료예정기간 등 4개 지표를 고려하여 중증도 평가 점수를 산정하는 방법 규정(별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피해구제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 전자우편 : smilexx2@korea.kr
- 팩스 : 044-201-6823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전화 : 044-201-6819, FAX : 044-201-68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436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14.5)에 따라 당초 자동차검사시 전조등 상향등을 검사하던 방식에서 하향등